

< 일 러 두 기 >

- 법령명 : 식품원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과실의 사용제한
- 제정일 : 2024년 7월 11일
- 최종개정일 : -
- 출처 :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(방문일 : 2024년 9월 20일)

식품원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과실의 사용제한

1.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의1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.
2. 가르시니아캄보지아(*Garcinia cambogia*) 과실 원료는 기름주머니 등의 재료로 감싼 후 물에 우려내 차로 마시거나 음식 조미용 또는 추출 후 식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제한하며, 일일 섭취제한량은 하이드록시시트르산(hydroxy citric acid)으로 계산하여 1,500mg이다.